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내란 또는 군사반란 등 행위 의원 제명〉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66호)

2025.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한창민 · 김재원 · 김준형 · 서왕진
신장식 · 박은정 · 차규근 · 백선희 · 김선민 · 용혜인
이성윤 · 강경숙 · 윤종오 의원(15인)

2. 제 안 일 : 2025. 4. 9.

3. 회 부 일 : 2025. 4. 10.

※ 의안번호 : 966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또한 국회의원은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으로 정치 행위와 발언으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발언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하는 정도의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여,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 신설 등).

III.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내란(「형법」 제87조) 행위나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형법」 제90조)하는 행위, ② 반란(「군형법」 제5조) 행위나 군사반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반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군형법」 제8조)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에 추가하고,¹⁾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그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제18호 신설, 제156조제7항 및 제163조).

1)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 ----- ----- ----- ----- . ----- 제10호 · 제17호 또는 제18호에 ----- ----- -----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설>	17. 「형법」 제87조에 따른 행위를 하였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내란을 예비 도는 음모하거나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18. 「군형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군사반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반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⑥ (생략)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55조제10호 · 제17호 또는 제18호에 ----- ----- -----

현행	개정안
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 -----.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② (생략) <u><신설></u>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은 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다.</u>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제155조제10호에</u>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제155조제10호·제17호 또는 제18호에 ----- -----.
④·⑤ (생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 「국회법」 제155조는 ① 헌법상 청렴의무 및 직위남용 금지의무 위반, ② 국회관계법상 각종 의무 위반, ③ 「공직자윤리법」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²⁾ ④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³⁾을 의원의 징계 사유로 열거하고

2) 국회자율권에 근거한 의원 징계는 원칙적으로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법 영역의 다른 법률의 위반행위를 「국회법」상 징계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공직윤리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 해당 법률의 징계 규정으로는 그 법의 위반행위를 한 의원을 징계할 수 없으므로 「국회법」에 별도로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2010. 5. 28. 「국회법」 개정 전에는 윤리심사와 징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있으나, 「형법」상 내란이나 「군형법」상 반란과 관련된 징계 사유는 두고 있지 아니함.

제163조는 징계의 종류로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30일(또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 사유별로 특정 징계 종류와 연계하고 있지 아니함.⁴⁾

한편, 의원 징계는 ① 징계 요구 ⇨ ②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보고 ⇨ ③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및 징계심사소위원회 심사 포함) ⇨ ④ 징계안의 본회의 의결 ⇨ ⑤ 징계 집행의 절차를 거침. 다만, 징계 절차의 특례로서 징계 사유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인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하고(윤리심사), 통고를 2회 받은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하였음(징계). 그런데 윤리심사 사유와 징계 사유 사이에 제재 정도를 달리 할 만한 일관된 구분기준이나 구분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10. 5. 28. 「국회법」이 시정되어 있던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가 징계제도로 일원화되었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가 징계 사유에 포함되었음.

4) 다만, 징계에 병과되는 수당등의 감액분에 따라 징계사유별 징계종류를 구분하고 있음.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함.⁵⁾

[표-2] 현행법상 징계 사유 및 절차

징계 사유	징계 절차
① 헌법상 청렴의무 및 직위남용 금지의무 위반 ② 「국회법」 상 겸직금지 규정 위반 ③ 「국회법」 상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 위반 ④ 「국회법」 상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변경등록 의무 위반 ⑤ 「국회법」 상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⑥ 「국회법」 상 이해충돌 우려 안건 등 회피의무 위반 ⑦ 「국회법」 상 정보위원회 위원의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위반 ⑧ 「국회법」 상 의제 외 발언 금지의무 위반 ⑨ 「국회법」 상 비공개 회의록 열람 등 금지의무 위반 ⑩ 「국회법」 상 비공개 회의내용 공표 금지의무 위반 ⑪ 「국회법」 상 회의의 질서 유지의무 위반 ⑫ 「국회법」 상 모욕 등 발언 금지의무 위반 ⑬ 「국회법」 상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의무 위반 ⑭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 또는 출석 요구서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⑮ 탄핵소추사건 조사 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⑯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⑰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⑲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징계 요구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⑳ 「국회법」 상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금지의무 위반	징계 요구 ⇨ 본회의 의결

5)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특정 의원의 발언이나 행위 등이 「형법」 제87조(내란) 또는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징계 이유로 하면서도,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현행 「국회법」상 인정되는 징계 사유인 「국회의원 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근거로 하는 징계안 4건⁶⁾이 최근 발의되었음.

6) 관련 징계안 발의 현황

연 번	징계안	의안번호	징계 사유(근거)	징계 이유
1	국회의원 (○○○) 징계안	7406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4조(직권남용금지), 「 <u>형법</u>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및 제123조(직권남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
2	국회의원 (△△△) 징계안	7477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대한민국헌법」 제46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회법」 제24조, 제25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 제2조, 제4조를 위반하였으며, 「 <u>형법</u>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및 제123조(직권남용)을 위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는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을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가장 중한 제명으로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
3	국회의원 (□□□) 징계안	8593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국회법」 제24조(선서),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며, 「 <u>형법</u>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15조(소요),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있는 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
4	국회의원 (◇◇◇◇) 징계안	8634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국회법」 제24조(선서),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며, 「 <u>형법</u> 」 제87조(내란), 「 <u>형법</u>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u>형법</u> 」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 <u>형법</u> 」 제115조(소요), 「 <u>형법</u> 」 제123조(직권남용), 「 <u>형법</u>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u>형법</u>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위반 소지가 있는 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

해당 징계안 4건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⁷⁾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인데,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징계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과할 것인지를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제명 중에서 결정하여 심사보고 하게 됨.

이에 개정안은 ① 내란(「형법」 제87조) 행위나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형법」 제90조) 하는 행위, ② 반란(「군형법」 제5조) 행위나 군사반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반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군형법」 제8조)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에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국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는 한편,

해당 행위의 중대성·위법성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징계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수준인 제명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2025년 7월 현재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첫째, 징계 사유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국회법」 제155조는 의원 징계가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의원에 대하여 국회가 자율권에 의하여 제재하는 것⁸⁾임을 감안하여,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형사벌의 범죄구성요건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형벌의 범죄구성요건을 의원의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즉, 의원 징계제도의 취지·목적과 현행 「국회법」상 징계 사유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의원 징계와 그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국가 형벌권에 근거한 「형법」상 범죄인 내란 및 예비·음모·선동·선전과 「군형법」상 범죄인 반란 및 예비·음모·선동·선전의 구성요건을 의원의 징계 사유로 「국회법」에 명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의원의 행위가 「형법」·「군형법」상 내란·반란 등의 객관적 구성요건(다수인, 폭행·협박, 반란행위 등)이나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권한이나 조사권한이 없는 본회의가 해당 징계안의 심의 과정에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참고로, 의원이 「형법」상 내란 또는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나 「군형법」상 반란 또는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를 하여 금

8)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686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에 따라 퇴직되어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상실하게 됨.⁹⁾

둘째, 징계 종류 및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수준인 제명¹⁰⁾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나 징계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가 부족한 상태¹¹⁾에서 의원 자격을 소멸시키는 징계처분인 제명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어 보임.

따라서, 징계 대상 행위의 중대성·위법성 등을 고려한 징계의 신속성 확보 측면과 가장 중한 징계 수준인 제명처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보장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징계 절차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적용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개정안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음. 이는 과거에

9) 「국회법」 제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10) 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국회법」 제164조에 따라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음. 다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안 가결 선포의 효력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 사례는 있음(헌법재판소 2022. 6. 3. 선고 2022헌사448 결정).

11)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심사 과정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징계심사소위원회 심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 심문, 징계대상자 변명, 증빙서류·해명자료 제출 등이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본회의의 징계안 심의 과정에서는 징계대상자 변명만 이루어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표-3]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런데, 침해적인 성격의 진정 소급입법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¹²⁾ 특단의 사정이 있거나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¹³⁾

따라서, 「형법」·「군형법」상 내란·반란 등의 행위를 한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진정소급효를 인정할지 여부는 그 공익상 이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및 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

12)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3, p.36

13)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105 전원재판부 결정